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약증거금에 대한 투자자에탁금이용료 지급 근거 마련〉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86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근거 마련	3
2. 투자자예탁금에 청약증거금 포함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의 이용대가(이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최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청약증거금이 개인과 법인 등 일반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사고자 할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탁하는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고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근거 마련

- 개정안은 현행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상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74조의2(투자자예탁금이용료)</u> <u>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예탁금이용료”라 한다)를 협회가 정하는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u>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u>

- 투자자예탁금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¹⁾으로,

1) 예를 들어,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증권계좌에 예탁한 자금, 증권 매입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파산이나 유용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예탁금을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²⁾에 별도로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증권회사 등이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면 증권금융회사는 각 증권회사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이를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운용하면서 예치의 경우 약정이자, 신탁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른 수익을 증권회사에 지급함.⁴⁾

□ 이러한 이자 및 운용수익은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투자자의 재산을 별도 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는 점에서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이용료(일종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⁵⁾

후 계좌에 남아 있는 잔여 자금, 증권을 매각하고 증권계좌로 받은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함.

2) 현재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로는 한국증권금융이 있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4) 예치방식은 통상의 예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보전 받으면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수취할 수 있고, 신탁방식은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대신 운용실적에 따른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신탁방식을 선호하며 외국계 금융투자업자들은 신탁방식보다 예치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됨. (출처: 정대섭,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별도예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법무」 제9집제2호, 2017.11.30., pp.214-215.)

5)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4-46조(투자자예탁금이용료) 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예탁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2023년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증권금융회사에 위탁한 투자자예탁금의 규모는 53조 8,625억원이고, 이에 대해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한 이자 및 운용수익은 1조 9,397억원으로, 평균 이용료율⁶⁾은 3.601% 수준임.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이자 및 운용수익에서 예금자보호료, 감독분담금 등의 관리비용⁷⁾을 차감하고 총 4,724억원의 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별 평균 예탁금이용료율은 0.877% 수준임.

[표1] 2023년도 투자자예탁금 평균잔고 및 투자자예탁금이용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투자자예탁금 평균잔고 ¹⁾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증권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투자자
위탁자예수금	420,909	15,221	2,774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42,825	1,462	646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74,891	2,714	1,304
합 계	538,625	19,397	4,724

주: 증권금융은 현금위탁필요액 제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주1) 한국증권금융 예치(신탁)기준(초과예치 등의 사유로 협회 통계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고시로 규정된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의

6) 투자자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예치금 평균 잔고(53조 8,625억원)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총액(1조 9,397억원 또는 4,724억원)으로 나눈 금액

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3-7조(이용료율의 산정 및 변경절차) ②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직·간접 제반비용을 감산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예금자 보호료 2. 감독분담금 3. 지급결제 관련 비용 4. 인건비 5. 전산비

6.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에 근거는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협회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 동시에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므로 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투자자나 금융투자업자 일방에게 과도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투자자예탁금에 청약증거금 포함

□ 개정안은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	① ----- ----- <u>청약증거</u>

현행	개정안
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 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금 등 투자자로부터----- ----- ----- ----- ----- -----.
② ~ ⑬ (생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 청약증거금은 일반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 등에 참여하여
주식을 사고자 할 때 계약금 명목으로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금전임.⁸⁾

□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투자자예
탁금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규정인 「금융
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을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
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현금예탁필요액 제외)으로 열거하고
있어 청약자예수금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⁹⁾

8) 투자자가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을 청약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청약대금을 예탁하는 경우
동 청약을 통해 취득하게 될 주식수가 확정되어 주금으로 납입되기 전까지 관리되는 금전

9)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3-5조(지급대상) 금융
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예수금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중 현금예탁필요액(한국거래소 「파생
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4조(수탁의 거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
야 한다.

[표2]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

[증권계좌]	[펀드계좌]	[선물옵션계좌]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증거금 이외의 예탁금	증거금 이외의 예탁금	증거금 이외의 예탁금	현행 지급대상
위탁증거금	펀드매수증거금	위탁증거금	
청약증거금		현금예탁필요액	현행 지급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감사원은 2013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여 이용료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증거금 성격의 투자자예탁금 등에 대한 이용료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범위를 더 넓히도록 조치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통보¹⁰⁾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 동안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634건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은 총
1,650조 7,92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예치수익은
약 1,0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됨.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이하 “현금예탁필요액”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감사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3.11.

[표3] 최근 3년(2021~2023년) 청약증거금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건 수 ¹⁾	금 액	예치수익
2021	231	9,038,180	84
2022	204	3,925,792	209
2023	199	3,543,949	757
합 계	634	16,507,921	1,050

주1)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건수 합계

(자료: 한국증권금융)

□ 이에 개정안은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투자자예탁금이용료가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의 하나로 명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청약증거금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의 하나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청약증거금은 ① 소비임치¹¹⁾로서의 성격과 ② 결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금 또는 증거금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

11)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이 경우 임치물인 자금의 소유권은 증권회사에 이전되고 증권회사는 임치계약 종료 시 같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만을 지며, 소비임치에 대하여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특별한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¹²⁾
- ② 또한, 증거금은 투자자의 매매주문과 동시에 발생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받아두는 것으로, 통상의 거래관행상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금이나 증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대기성 자금인 일반적인 투자자예탁금과 달리 증권회사가 결제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달리,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 ①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청약증거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¹³⁾이 제기될 수 있는 점,
- ② 투자자가 증권 등의 매매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납부하는 위탁증거금¹⁴⁾의 경우에도 소비임치와 증거금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

12) 지원림, 『민법강의』(제18판), 2021.1., p.1495.

13) 감사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3.11., 정대섭,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별도예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법무」 제9집제2호, 2017.11.30., pp.230.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① 거래소의 회원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수탁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받아야 한다.

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음.

○ 둘째,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용료 지급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실무상 예치방식을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일반 투자자예탁금¹⁵⁾의 경우에는 예탁된 다음 날 별도 예치하고 있음.

- 반면, 청약증거금의 경우에는 규정상 납입기일 전까지 별도 예치해야 하나¹⁶⁾, 증권회사는 통상 청약 후 2일 내에 해당 자금이 반환되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청약마감일 당일에 예치하고 있는데,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납입과정에서 이용되는 결제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87조(위탁증거금)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5)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4-39조(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등) ①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규모(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예수금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예수금은 제외할 수 있다. (각 목 생략)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 조건부예수금 (이하 생략)

③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의무예치액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예수금 : 다음 영업일까지

2. 제1항제2호의 예수금 : 해당 영업일. 다만 영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시점을 지나서 입금된 예수금에 대하여는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

16)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4-44조(별도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청약증거금의 환불일 이후에는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납입기일전까지 예치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당해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

2. 당해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상호계산,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스텝(소액결제시스템)의 특성¹⁷⁾상 투자자가 청약만기일에 입금하는
청약증거금을 증권회사는 그 다음 날에 수령할 수 있음.

[표4] 투자자예탁금 예치·반환 절차

	T일			T+1일		
	15:30	18시	24시	15:30	17시	18시
주식· 파생	~24시까지 예탁금 납입분			예탁금 정산	증금 예치	
펀드	~15:30까지 예탁금 납입분	예탁금 정산	증금예치 (당일예치)			
		15:30 이후 예탁금 납입분			예탁금 정산	증금예치 (익일예치)

- ① (주식· 파생) 고객 예탁금을 익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별도 예치
* 당일(T일) 자정기준 별도 예치금을 산정, 익영업일(T+1일) 17시 예치
- ② (펀드) 고객 예탁금을 해당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별도 예치
* 규약에서 정한 매수청구일 구분시점(통상 국내주식형펀드 15시 30분) 기준
당일(T일) 별도예치금을 산정, 해당영업일(T일) 17~18시 예치

(자료: 금융위원회)

[표5] 청약증거금 예치·반환 절차

T일(청약마감일)		T+1일		T+2일(반환일)	
16시	17시	11시		9시	
투자자 증거금 납입		증권사 유입 (차액결제)	증권사 운용	초과증거금 투자자 반환	
	증금예치 (할인어음 매입)			상환 (증권사→증금)	

- ① (청약증거금 납입) 청약마감일(T일) 16시 투자자 청약증거금 납입 완료
- ② (예치)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청약증거금 상당액을 차입(할인어음 매입)하여 예치
- ③ (차액결제) 청약증거금이 익영업일(T+1일) 11시 증권사로 유입
* 증권사는 해당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운용
- ④ (초과증거금 반환) 초과증거금 반환일(T+2일) 오전 증권사는 단기투자 상품을 매도하여, 청약자 계좌로 초과증거금 반환, 증권금융회사 차입금 상환

(자료: 금융위원회)

17) 국내 지급결제제도 개요는 【참고자료】 참조

- 따라서, 증권회사가 청약증거금을 마감일에 예치하기 위해서는 1일간의 자금조달수요가 발생하여 자금차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조달비용이 예치수익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¹⁸⁾¹⁹⁾
- 예를 들어, 2023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두산로보틱스의 경우, 고객이 납입한 청약증거금은 약 33조 1,577억원, 이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은 93억원인 한편, 당일 예치를 위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조달비용은 120억원 수준임.²⁰⁾²¹⁾
- 셋째, 해외 주요국의 경우 증거금에 대한 이자 등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할 경우 내국인은 해외 투자에 대한 증거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반면, 외국인은 국내에서 증거금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어 국부 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18)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2024년 금리기준으로 청약증거금 증권금융 별도예치에 따른 이자수익률은 2.55%(연평균금리)인 반면,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이자율은 3.30%(연평균금리) 수준임.

19) 참고로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도 예탁 당일에 별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제3항제2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당 예수금은 기관투자자 자금이 90% 이상으로 대부분 거액결제시스템(당일 입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약증거금과 달리 특별한 대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음.

20) 두산로보틱스 상장 관련 증권회사별 수익비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한투	미래	KB	NH	키움	신영	하나	합계
청약증거금	115,271	114,570	35,218	35,470	9,855	10,200	10,993	331,577
예치이자수익(A)	32.2	32.0	9.8	9.9	2.8	2.9	3.1	92.7
증금대출비용(B)	41.7	41.4	12.7	12.8	3.6	3.7	4.0	119.9
비용(A-B)	-9.5	-9.4	-2.9	-2.9	-0.8	-0.8	-0.9	-27.2

주: 다만, 증권사가 청약증거금을 직접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한국증권금융)

21) 다만, 증권사가 청약증거금을 직접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포함되지 않은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필요가 있음.²²⁾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국·영국의 경우 증거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찾기 어렵고,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 규정에서 위탁증거금에 대해 이용료 지급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투자자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증거금 성격의 금전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청약증거금과 관련한 증권회사의 수익구조,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의무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① 청약증거금은 결제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단순 투자 대기자금인 일반 투자예탁금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 ② 청약증거금 예치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할 때 이용료 지급이 어렵다는 증권업계 의견이 있다는 점, ③ 청약증거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²³⁾

22) 이러한 이유로 제20대국회에서는 청약증거금 외에 위탁증거금에 대해서도 이용료 지급을 면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3743호, 2016.11.21., 임기만료폐기)이 발의된 바 있음.

2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증권금융**은 ① 청약증거금은 소비임치와 담보금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 ② 투자자예치금은 과거 「舊증권회사의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98.4.1.제정)을 통해, 청약증거금은 「舊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98.4.1.제정)을 통해 각각 규율하여 과거부터 두 가지 금전을 구분했다는 점, ③ 별도예치금은 투자 대기자금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나,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물량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²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금융투자협회**는 ① 현행 법규상 의무예치 대상인 투자자예탁금과 의무예치에서 제외되는 증거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점, ② 청약증거금은 1~2일 내에 환불되는 특성상 자금운용이 어렵고 인건비 등의 책정이 복잡해 이용료 산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

되지 아니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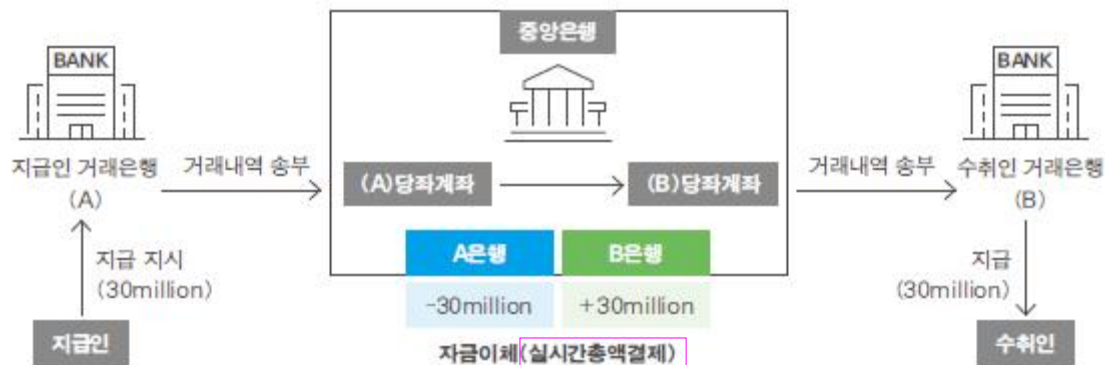
24)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물량을 인수하거나, 다른 인수를 채모집하여야 하는 부담

【참고자료】 국내 지급결제제도 개요(거액결제·소액결제시스템)25)

※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의 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 자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소액결제시스템'으로 분류

< 거액결제시스템 >

- ▶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신한은금융망, BOK-Wire+)은 결제 시점(즉시 처리)과 중요도가 높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국채대금지급 등의 결제를 처리하며, 실시간결제방식(총액·혼합형)으로 운영



< 소액결제시스템 >

- ▶ 민간(금결원)에서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주로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체 거래결제시스템으로,
-양자간 상계처리한 차액을 지정된 시점(T+1일, 11시)에 결제하는 다자간 이연(지정시점)차액결제방식으로 운영

